

[별지서식 제1호 앞면] 본 광고사전검토필증은 온라인을 통해 교부되었습니다.

|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
|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
| 접수번호<br>01-01-E-2000471  | 광고사전자율심의신청서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처리기간<br>7일 |
| 신청자명<br>주식회사 큐비스트  | 대표자<br>오영우   | 사업자등록번호<br>893-88-00851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
| 신청자주소<br>서울 성동구 성수이로 51 609호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락처 | 담당자명: 안윤아 |            |
|  |              | 연락처: 010-9452-6239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
|  |              | 팩스: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
| 광고 상품명<br>숨쉬기 쉬운 다나 일회용<br>마스크   | 광고주명<br>큐비스트 | 광고매체<br>인터넷 (A안)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
| 대행사명<br>큐비스트   | 제작자명<br>큐비스트 | 심의구분<br>초심 O<br>수정심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
| 검토의견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
| 수정 요망 사항<br>1. pH/폼알데하이드/아릴아민 모두 검출안됨<br>→ 'pH 적합 / 폼알데하이드, 아릴아민 모두 검출안됨'으로 구분하여 기재바람.<br><br>2. 의무표시사항은 심의에서 제외하고 검토하였음을 밝힘. 끝.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
| 변경내용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

광고물의 사전 검토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.

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귀중

2020년 7월 29일  
신청인 주식회사 큐비스트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심의의결 | 심의결정<br>광고적합        | 2020년 8월 13일<br>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<br> |
|      | 심의번호<br>20-E1-07-11 |   |
|      | 기타                  |   |

\* 주의사항은 뒷장에 첨부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[별지서식 제1호 뒷면] 본 광고사전검토필증은 온라인을 통해 교부되었습니다.

| 광고 이미지   |  |     |   |
|--|--|-----|---|
|  |  |     |   |
| 기타   |  | 면번호 | 2 |

|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|
|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|
| 심의의결 | 심의결정 | 광고적합        | <p>2020년 8월 13일<br/>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</p>  |
|      | 심의번호 | 20-E1-07-11 |  |
|      | 기타   |             |  |

#### ※ 필증 사용시 주의사항

- ①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임의 변경하여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.
- ② 원하실 경우,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부터 사전에 검토 받은 사실을 심의필 광고물에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.  
이 경우 광고물 우측상단에 <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사전검토필 심의번호> 문구로 한정하며, 기구 로고 필요 시 사무처에 별도 문의바랍니다.  
단, 패키지 및 기타 포장용기에는 기구 로고 및 심의번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③ '2항의 표시 이외에 광고표현 내 심의기구 언급 및 필증 이미지와 기구 로고 사용은 불허합니다.
- ④ 필증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.
- ⑤ 필증을 위·변조하거나 상기 사항 위반 시 모든 법적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.
- ⑥ 필증에 대한 확인 및 기타 문의는 기구 사무처(02-2144-4300/ 4304)로 연락 바랍니다.